

#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4~ 9 |
|----------|---------|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출일자  | 2004. 5. . 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      |

## □ 개정 이유

-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실현과
-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- 담당신설에 따른 실·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함( 4 2 )
  1. ( )
    -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기획·조정
  2. 행정과장의 사무이관
    - , 호적 및 주민등록·과감
    - ⇒ 자치지원과로 이관
  3. 자치지원과장 사무추가
    -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
    -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
    - 선거 및 국민투표
    - 호적 및 주민등록·과감
    -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 운영

## □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【 】

#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 2 1 3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1. 기획감사실장

- 가. 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·부제
- 나.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운영 총괄
- 다.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
- 라. 법제·의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
- 마.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기획·조정 및 지원

## 3. 행정과장

- 가. 직제·인사에 관한 사항
- 나.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다.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- 라. 공무원 보수지급 등 업무
- 마. 공무원 복무관리
- 바. 자료관 설치 및 운영
- 사. 행정 정보화 추진
- 아. 군민정보화 교육
- 자. ,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
- 차.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
## 4. 자치지원과장

- 가.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
- 나. 읍·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
- 다.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라.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

- 마. 선거 및 국민투표
- 바. 호적 및 주민등록 · 1감
- 사.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운영 · 1원에 관한 사항
- 아. 권방위에 관한 사항
- 자. 생활현장 민원처리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